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Global Data Alliance 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귀하

Global Data Alliance (GDA)¹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이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I. 소개

글로벌 데이터 얼라이언스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전념하고 전 세계에 책임감 있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들로 구성된 업계 간 연합체입니다.

GDA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 세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데이터를 이전하는 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연합체입니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은 제조 및 농업 부분부터 스타트업 및 서비스 공급업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와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혁신과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은 모든 국가에서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기업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며 생산성 역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디지털 기술과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의 원활한 국외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제를 뒤 받침 하는 현대적이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지역,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모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란 AI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머신 러닝 기술과 같은 데이터 이전으로 가능한 기술과 서비스는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새로운 데이터 보호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국외에서 열람되거나 국외로 이전되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이러한 기술과 서비스는 원격 작업 및 가상 협업,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사이버 보안, 부정 행위 모니터링 및 방지, 자금세탁 방지, 조사 등 많은 중요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건강, 프라이버시, 보안 및 지적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기타 활동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II. 제언

GDA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을 위한 다수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²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GDA는 제정(안)의 목적이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³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BSA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의 8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 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GDA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사항을 위원회가 고려해주시길 희망합니다.

1.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위한 계약 기반 메커니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상당 부분 확대하였지만, 표준계약조항(이하 “**SCC**”)을 포함한 계약 기반 이전 메커니즘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SCC**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위한 실행 가능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국가 및 지역 간 이전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 기반 이전 메커니즘을 널리 채택해왔습니다. **BSA** 회원사들도 **유럽연합의 표준계약조항 (EU SCCs)**와 **영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협약(International Data Transfer Agreements, IDTAs)** 등의 **SCC**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협정에 따른 국외 이전 메커니즘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정(안)와 관련하여, **BSA**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가 ‘인증’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SCC**와 같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인정되는 다른 법적 수단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보호위원회**와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제정(안)의 제 12 조부터 제 14 조 및 별표 1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유럽연합의 SCC**, **영국의 IDTA**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SCC**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SCC**가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정(안)의 별표 2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승인한 인증으로 통지받고 목록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SCC**를 채택한 기업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나 다른 인증 없이 한국에서 원활하게 개인정보를 이전받고 또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 **BSA**는 제정(안)의 제 12 조부터 제 14 조 및 별표 1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제 3자 인증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 더욱 유연성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27701,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사용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들은 여러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다양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최적의 메커니즘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판단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로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허용됩니다. **보호위원회**가 해당 국가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시행령 개정(안) 제 29 조의 11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회와 **보호위원회**는 제정(안)의 제 18 조의 22에 따라 평가를 수행할 때, 모든 국가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많은 주에서 개인정보의 상업적 수집 및 사용을 규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하거나 도입했지만, 포괄적인 연방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와 **보호위원회**는 국가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할 때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유무를 넘어서 모든 관련 법과 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이에 **BSA**는 **보호위원회**가 국가의 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일정을 규정하고, 한국이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할 국가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는 평가 대상 국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시기를 제언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호위원회**는 어느 국가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III. 마치며

GDA의 의견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제정(안)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대담한 정책은 혁신을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며 한국 정부 기관은 물론 한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를 위한 기타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창출하려는 정책 입안자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특히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Joseph P. Whitlock
Executive Director
Global Data Alliance
josephw@GDA.org

¹ The Global Data Alliance 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책임 및 보호에 전념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교차 산업 연합체로, 전 세계적인 개인정보 이전 기술을 통해 산업을 혁신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GDA 의 회원사들은 전 세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첨단 제조, 항공우주, 자동차, 소매, 전자, 금융 서비스, 건강,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천연 자원, 공급망, 통신 분야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GDA 는 글로벌 협회인 BSA | The Software Alliance 산하에 있는 연합체입니다.

GDA | The Software Alliance administers the Global Data Alliance. For more information on the Global Data Alliance, please see: <https://www.globaldataalliance.org>

²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GDA 의견서 (2023년 6월), <https://globaldataalliance.org/wp-content/uploads/2023/07/06302023gdainfoproact.pdf>.

³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2023) 제 1 조

⁴ 다음을 포함함:

1. 대상국등의 법령, 규칙 또는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법 제 3 조 등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고, 법 제 4 조 등에서 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2. 대상국등에 제 1 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준수를 보장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는 독립적 감독기관이 존재하는지 여부
3. 대상국등에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피해구제 절차가 정보주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여부
4. 대상국등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법률적 근거, 절차 및 피해구제 등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조치의 존재 여부와 실질적 보장 여부
5. 대상국등의 감독기관이 보호위원회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
6.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